

의안번호	제2047호
의결 연월일	2019. 10.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자	이쌍자 의원 외 5인
발의연월일	2019. 10. 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쌍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7
----------	------

발의연월일: 2019. 10. 1.

발 의 자: 이쌍자·최상립·하창현·이용재
김향숙·김원순 의원(6인)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우리 군 의회 회의규칙에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표현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및 조례의 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준수 사항 수정

- “전일” ⇒ “전날” (안 제9조)
-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안 제18조)
- “한한다” ⇒ “한정한다” (안 제19조)
- “저촉되는” ⇒ “어긋나는” (안 제26조)
- “의제외에 미치거”, “성질에 반하여” ⇒ “의제와 관계없거”,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 (안 제31조)
- “전일” ⇒ “전날(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안 제33조)
- “약간인” ⇒ “몇 명” (안 제42조)
- “피심의원” ⇒ “심사대상 의원” (안 제70조, 제72조)
-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 “(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안 제71조)
- “깍연” ⇒ “흡연행위” (안 제74조, 제80조)
- “주기가” ⇒ “술기운이” (안 제79조)
- “서적류의 열독행위” ⇒ “서류를 소리 내어 읽는 행위”(안 제80조)

3. 참고사항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협조(기획감사담당관-10817호)

다.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27호

- 입법예고 기간: 2019. 10. 4. ~ 10. 10.(6일)

-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

4.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성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고성군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고성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의장이”를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회”를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을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6조 중 “저촉되는”을 “어긋나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제외에 미치거”를 “의제와 관계없거”로, “성질에 반하여”를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발언회수외 제한)”을 “(발언 횟수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5분 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하“5분 자유발언””을 “이하 “5분자유발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분 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전일”을 “전날(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9조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 중 “약간인”을 “몇 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제48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회수”를 “횡수”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가할”을 “덧붙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대상 의원”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답변서의 위원회심사등)”을 “(위원회의 답변서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대상 의원”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대상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피심의원은”을 “심사대상 의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3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대상 의원”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전단 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경찰서”로 한다.

제74조제4호 중 “깃연”을 “흡연”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전단 중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 중 “주기가”를 “술기운이”로 한다.

제80조제4호 중 “깃연행위”를 “흡연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서적류의 열독행위”를 “서류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의장은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를 “의장은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u>고성군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고성군의회</u>----- ----- ----- ----- -----.</p>
<p>제2조(등록) <u>의회의원</u>(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조(등록) <u>고성군의회 의원</u>----- ----- ----- -----.</p>
<p>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u>의장이</u>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p> <p>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u>사무과장</u>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9 2. 3. 6 의회규 5></p>	<p>제3조(의석배정) ①----- <u>고성군의회 의장</u>(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 ----- ----- -----.</p> <p>②----- ----- <u>의회사무과장</u>----- -----.</p>
<p>제4조(개회식) <u>의회</u>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p>	<p>제4조(개회식) <u>고성군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 ----- ----- -----.</p>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생략)

②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생략)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생략)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을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날-----
-----.

제1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현행과 같음)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안의 정리) -----
----- 어긋나는 -----

-----.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 의제와 관계없거-----
-----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
여-----.

제42조(투표절차) ① (생략)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에 참여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④ (생략)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생략)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단서 신설>

폐쇄될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2조(투표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몇 명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 의회사무과장 -----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 다만, 의장이 비밀을

② ~ ⑤ (생략)

제53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② (생략)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7.4.3. 의회규 8>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질병

유지해야 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위원의 발언) ①-----
----- 회수 -----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덧붙일 -----
-----.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79조-----

----- 심사대상 의원-----

②심사대상 의원-----

기타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등) ① ~ ③ (생략)

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

-----.

제71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심사대상 의원-----.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 심사대상 의원-----.

②----- 심사대상 의원은 -----

----- 심사대상 의원-----
-----.

③심사대상 의원-----

-----.

제73조(경호) ①-----

----- 관할경찰서-----

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2. 3. 6 의회규 5>

② (생략)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3. (생략)
- 4. 음식물의 섭취와 깍연
- 5.·6. (생략)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92. 3. 6 의회규 5>

② ~ ④ (생략)

제79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주기가 있는 자
- 3.·4. (생략)
- ②·③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

- 1. ~ 3. (현행과 같음)
- 4. ----- 흡연
- 5.·6. (현행과 같음)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 의회사무과장-----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 1. (현행과 같음)
- 2. 술기운이 ---
- 3.·4.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음식물의 섭취나 끼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 8. (생략)

제82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 윤리심사 대상 의원 또는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 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 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 ⑤ (생략)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

1. ~ 3. (현행과 같음)
4. ----- 흡연행위
5. ----- 서류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

6. ~ 8. (현행과 같음)

제82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참고사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1 용어 정비의 원칙

한글로 표기

-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한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

-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로 쓴다.

일반 한자어의 순화

-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쓴다. 다만, 우리말로 쓰면 오히려 그 뜻을 이해 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 쉬운 한자어라도 그에 해당하는, 널리 쓰이는 쉬운 우리말이 있으면 우리말로 바꾼다. 다만, 뜻풀이 방식의 순화로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피한다.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

-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다면 널리 쓰이는 적절한 한자어로 순화한다.

외래어

- 외래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기로 하되,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행을 존중하며, 그 외에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국립국어원과 법제처 등 전문 기관에 자문한 후 사용한다.

너무 간단하거나 지나치게 줄여 쓴 말의 수정

- 너무 간단해서 알기 어려운 용어나 지나치게 줄여 써서 알기 어려운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첨가하거나 쉽게 풀어 쓴다.